

네트워크 회의
-차별금지 회의

“코로나19와 차별, 평등과 존엄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박한희¹⁾

[한국,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상근변호사]

1)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1. 들어가며 : 코로나19가 드러낸 차별²⁾

2020년 초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은 감염병이라는 재난적 위기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보여주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는 어떠한 의도를 갖지 않은 가치중립적인 존재이지만 누가 더 감염위험에 노출되는지, 또한 누가 더 피해를 받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한국사회의 기존의 차별적 구조를 여실히 드러내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더 크게 다가왔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감염병의 원인인 것처럼 지목되며 낙인과 혐오를 마주했고,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감염 위험 등에 더 크게 노출됐다. 정부의 방역 정책에 있어서도 이들은 심각한 차별을 경험했다.

2. 코로나19와 차별 : 인권의 원칙

유엔은 2020. 4. 23. 발표한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³⁾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차별하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차별적으로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주목할 점: 평등, 비차별, 포용이 이번 위기의 핵심이다.

평등과 비차별은 언제나 적용되는 핵심적 인권이지만 코비드-19 전염병은 불평등과 차별적 관행은 용납될 수 없고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전염병 퇴치 노력에서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 없다.

불평등은 이미 소외된 특정 집단의 인권 향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전염병은 특정 집단이 지나친 타격을 입도록 하는 근본적인 구조적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전염병이 특히 소외된 집단과 같은 특정 집단에 타격을 입히는 방식은 이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역시 2020. 4. 27. 발표한 <COVID-19 지침>⁴⁾ 중의 하

2) 이 글은 2020. 6. 23.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가 발표한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몇가지 사례들과 제안들을 추가한 글입니다.

3) 유엔 사무총장실(2020. 4. 23.),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 『COVID-19 관 련 국제인권규범모음집(국가인권위원회 편역)』.

나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들었다. 특히 “코비드-19 정보 제공 및 대응 노력은 국적, 인종 또는 종교 소수자, 원주민, 이주민, 실향민, 난민, 고령자, 장애인여성, LGBTI, 아동 또는 극심한 빈곤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처럼 누락되거나 배제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특정 국적 및 인종 그룹에 대한 낙인, 차별,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역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코비드-19 질병 명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수자 집단이 낙인과 차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도 누구도 배제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초창기부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원칙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등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이 심각한 차별에 노출되었다.

3.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19가 드러낸 차별의 양상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19가 드러낸 차별의 양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1) 특정 집단, 개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혐오

확산 초기 먼저 낙인, 혐오의 대상이 된 집단은 ‘중국(인)’이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을 이유로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 정치인들은 ‘질병 명명에 있어 특정 지역, 사람의 이름 등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한폐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중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했다.⁵⁾ 중국 이주민들이 많이 사는 대림동도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⁶⁾ 이러한 중국인 혐오는 이후 외국인 강사 등에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이주민을 모두 추방해야 한다는 이주민 전반에 대한 혐오로도 이어졌다⁷⁾ 이러한 혐오는 지자체가 방역과 상관이 없음에도 외국인 확진자의 국적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⁸⁾

3월에 들어서는 대구지역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신천지, 대구 주민 등도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신천지의 경우 교단 상층부의 비협조적인 대응이 더해져 신천지 신도라는 것만으로 사회적으로 당연히 배척하고 차별해도 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성소수자 역시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5월 초 이태원 지역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4)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2020. 4. 27.), 「COVID-19 지침」, 『COVID-19 관련 국제인권규범모음집 (국가인권위원회 번역)』.

5) 「'우한 폐렴' 명칭을 고집하는 조선.한국경제와 종편」, 『미디어오늘』, 2020. 02. 12.

6) 「"[르포]"우리가 괴물입니까?" 코로나 100일, 대림동 할퀸 혐오」, 『아시아경제』, 2020. 04. 28.

7) 「"너희 나라로 돌아가", "성소수자 아웃" 코로나 확산, 커지는 혐오」, 『아시아경제』, 2020. 05. 19.

8) 「아우팅 막는다더니...일부 지자체, 확진자 특정 가능한 '동선 공개」, 『경향신문』, 2020. 05. 20.

성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혐오와 낙인을 불러왔다. ‘게이클럽’을 불필요하게 강조하고 성소수자 커뮤니티 업소에 대해 자극적인 기사를 내놓은 언론들과, 방역과 무관하게 개인의 상세 동선을 공개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겹쳐서 성소수자들인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혐오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다⁹⁾¹⁰⁾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혐오는 특정 집단에만 한정되지 않고 확진자 및 접촉자 개개인을 향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감염 그 자체보다도 이로 인한 혐오와 낙인이 두려워 숨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¹¹⁾ 그리고 이렇게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혐오와 낙인은 그간 HIV 감염인에 대해서 행해지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그렇기에 HIV 감염인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인 혐오와 낙인이 전 사회적으로 펼쳐지는 것에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했다.

2) 코로나19 감염 위험 및 관련 피해에서의 차별

앞서 말했듯 바이러스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은 개인과 집단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었다. 가령 구조적인 성차별로 인해 여성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해지는 지점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이다.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기준 전국 보건업 종사자 중 77.3%가,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중 85.9%가 여성이었다. 이러한 직군의 종사자들은 직업 특성상 사람들과의 대면접촉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기에 그만큼 감염에 노출될 위험에 놓인다.

또한 코호트 격리조치로 103명 전원이 확진되고 7명이 사망한 청도대남병원의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시설에 격리된 장애인들은 심각한 건강 위험을 받아야 했다.¹²⁾ 일상적으로 접촉을 해야 하는 장애인과 활동보조사 역시 서로가 서로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고, 이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가 중단되어 장애인이 또 다른 건강상 위험에 처하는 일도 발생했다.

방역을 위한 장비, 지원 제도에서의 차별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코로나19확산 초기 관련 재난방송에서 수어통역사가 배치가 되지 않거나, 화면에 안 잡히는 상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권고가 나오기도 했다.¹³⁾ 마스크는 방역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수단임에도, 공적마스크 공급제도 초기에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카드가 요구됨에 따라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이 안 되는 6개월 미만 체류자, 유학생, 미등록 이주노동자, 난민신청자는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었다.¹⁴⁾ 또한 직장 내에서의

9) 「코로나19마저 악용… 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라」, 『미디어오늘』, 2020. 05. 13.

10) 「시민단체 "방역 정책이 성소수자 혐오 촉발…인권침해 줄여야"」, 『연합뉴스』, 2020. 05. 14.

11) 「"몸 아픈 것보다 사람들 시선 더 무서워" 코로나19 혐오, 이대로 괜찮나」, 『아시아경제』, 2020. 03. 10.

12) 「'코로나19' 참담했던 장애인 삶의 기록」, 『에이블뉴스』, 2020. 06. 5.

13) 「인권위 "코로나19보도화면에 수어통역사 포함하라"」, KBS, YTN, 연합뉴스TV 제외 방송사들, 정브리핑 뉴스 화면에 수어통역사 배치 안해」, 『미디어오늘』, 2020.02.29.,

14) 「법 밖의 이주민 39만명…마스크마저 차별 말길」, 『경향신문』, 2020.03.19.

4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미가입 이주민도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구매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차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했다. 가령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고 비정규직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차별도 있었다.¹⁵⁾ 쿠팡의 경우 일터의 방역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확진자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¹⁶⁾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차별적 피해는 단지 건강권 침해만이 아니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실물경제가 위축되자 기업들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무급휴직을 강요했다. 그리고 해고의 대상은 주로 비정규직 특수노동자들이 되었다. 특히 산업 자체가 위축된 항공, 관광산업에서는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이루어졌다. 아사아나 항공기 청소노동자의 경우, 500명 중 희망퇴직 120명, 정리해고 8명, 무기한 무급휴직이 370명이나 되었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외국인 조종사만을 특정해서 무급휴직을 실시했다.¹⁷⁾ 또한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사회적 돌봄시설 운영이 멈춤에 따라 돌봄은 가족의 책임이 되었다. 그리고 성차별적 구조 속에서 이러한 돌봄은 주로 여성들의 몫이 되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여성,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학대가 증가하기도 했다.¹⁸⁾

2)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의 차별

코로나19 방역, 피해에 대한 정부 정책에서도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은 차별을 받았다. 앞서 보았듯이 미등록 이주민은 공적 마스크 공급제도에서 배제되었다. 마스크 구입에 신분증을 요구함에 따라 신분증상 성별과 외관상 성별이 불일치하는 트랜스젠더도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정부는 돌봄공백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 시 비용을 지원하는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거 커플, 동성 커플은 이러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특히 긴급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를 정상 가족 형태로 보고 이주민과 선주민을 가르면서 시민/비시민을 나누는 차별적 구조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주민 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이주민은 배제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가 내려졌다.¹⁹⁾ 한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노숙인들 역시 재난지원금 수령을 할 수 없었고, 세대주를 기준으로 한 지급체계는 가족과 불화를 겪는 탈가정 청소년 등을 배제했다.

4. 코로나19와 차별에 대한 대응 원칙과 사회적 제안

미등록이주민들은 여전히 제외되었다.

15) 「비정규직은 우리 직원 아닙니다. 마스크차별 서러운 비정규직」, 『KBS』, 2020. 03. 19.

16) 「다른 사원 동요시키지 말라 집단감염 촉진시켜」, 『아시아경제』, 2020. 05. 28.

17) 「잔인한 5월, 항공업계 “월급 줄고 무급휴직.”」, 『아시아 타임즈』, 2020. 05. 06.

18) 「코로나19 사태로 '방콕' 오히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늘었다」, 『중도일보』, 2020. 04. 23.

19) 「국가인권위 “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 평등권 침해”」, 『레디앙』, 2020. 6. 11.

이와 같이 코로나19는 기존의 사회에 존재하던 차별적 구조를 드러내고 더욱 강화했다. 바이러스 자체는 평등할지 몰라도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은 평등하지 않다는 현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는 방역, 예방, 지원정책 전반에 있어 평등과 반차별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를 겪는 우리는 차별과 혐오가 방역과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타인을 혐오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할 수 있다. 재난과 위기에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본래적인 평등이 존중되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취약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이해가 관련 대응에서 일차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취약한 필요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의 필요가 충분히 존중하고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정정책적인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업에 취약계층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항들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제4조). 또한 감염병과 관련된 권리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시민’의 권리로 확장해야 한다(제6조). 구체적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분석, 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이 명문화되고 실제 대책들이 수립되어야 한다(제7조). 한편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2는 감염취약계층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감염병 상황에서는 장애인, 빈곤에 처한 사람, 이주민, 취약 노동자 등 다양한 집단이 위기 상황에 놓이는바, 이들을 포괄하여 감염취약계층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예방법 제9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성비를 포함해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감염병 시책에 소수자들의 경험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방역, 예방, 지원정책 전반에 있어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별, 장애, 인종 등에 따라 감염병 피해가 어떻게 차등적으로 발생하는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갖추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취약한 집단을 위한 특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돌봄지원제도 등 보편적인 지원제도는 개인별로 접근가능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낙인과 혐오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처벌 위협 등 잘못된 메시지를 내거나 불필요하게 정보공개를 실시한 영향도 있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자신들의 행동이 불러올 수 있는 영향을 인식하고 낙인과 혐오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차별의 양상은 감염병이라는 재난을 통해 새롭게 제기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존재하던 차별적인 구조가 재난 앞에 더욱 드러난 것들이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6. 30. 발표한 「평등 및 차별금지법」 시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차별시정 의무를 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긴급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소수자 또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재난 시의 차별방지 의무가 포함될 필요도 있다. 이미 6월 30일 유엔인권최고대표 역시 “한국이 대유행 대응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신속한 도입을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고 이야기한 바,²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없는 과제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20) Statement by Michelle Bachelet,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2020. 6. 30.)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6015&LangID=E>